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투자협약서

2009. 08.



함양군
(주)다온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투자협약서

2009. 08.



함양군
(주)다온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투자협약서

함양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다온(이하 “을”이라 한다)은 함양군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09. 7. 10일자 함양군 개발촉진지구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민간 투자자 공모공고(함양군 지역개발사업단 공고 제2009-19호)에 의하여 제출한 제안서 심의 결과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제안서상의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사업시행자라 함은 “을”을 말한다.
② 사업계획서라 함은 2009. 7. 10일 대남전원주택조성사업 민간 투자자 공모공고에 의하여 “을”이 제출한 제안서를 말한다.
③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지구라 함은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일원의 함양군개발촉진지구 대남전원주택 조성계획 지구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무) ① “갑”은 “을”에게 본 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다. 다만,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② “갑”과 “을”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한다.

제4조(사업내용) ① 본 사업의 위치는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일원의 토지로서 함양군 개발촉진지구 대남전원주택조성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한다.

② 사업은 기반시설과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정지구 면적은 61,395m²로 하고 주요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지 : 36,706m²
2. 상업용지 : 2,433m²
3. 공공시설용지 : 8,046m²
4. 녹지용지 : 14,210m²

④ 개별법에 규정한 도로, 상수도 및 오수정화시설 등의 시설은 해당 개별법에 정한 적합한 규모 및 규격으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규모는 사업계획서와 같다. 단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실시계획서에 따른다.

제5조(사업기간) ①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2010.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 준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을”은 “갑”에게 사업기간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승인 등을 2009년 11월말까지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인·허가 및 승인 기간 만료일 1개월 전

까지 “을”은 “갑”에게 인·허가 및 승인 기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추가지정으로 인한 사업기간의 변경은 상기 사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연장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을”은 사업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수정 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된 계획서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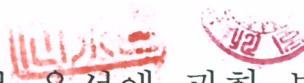
② “갑”은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계획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에게 사업의 종류, 규모 등에 대하여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협약당사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사정의 변경, 사업추진의 취지, 목적과 협약 당사자간의 사업추진 실현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자) ① 사업시행자인 “을”은 직접사업을 시행하여야하며 새로운 법인을 설립·승계할 수 없다

② “을”은 지분율 10% 이상인 주주의 지분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의 해지사유가 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제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중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법인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의결권 또는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총사업비) ① “을”의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수정된 사업계획의 금액으로 한다.

② “을”은 총사업비의 ±5%이상의 사업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증액되거나 감액된 합계금액이 당초 사업비의 ± 10%이상일 경우에는 “갑”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우선투자) “을”은 본 사업을 위하여 증자하는 납입자본금을 본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사업이행보증) ① “을”은 본 사업의 정상적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상의 계상된 사업비의 2/1,000 상당한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방법으로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10%이상 사업비 증액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8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갑”이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시키거나 “을”이 이행보증 보험증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발행한 금융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토지 등 보상) ①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지장물의 보상은 “을”이 시행하며 관련된 대가와 용역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예정지구내의 토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갑”이 대행한다.

③ 보상대상 편입토지와 지장물은 “을”이 책임 조사하여 확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고 제출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 매수한다.

④ 협의에 의한 매매가 어려운 잔여토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수용절차를 거쳐 토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며, 토지 매입과 관련된 모든 민원은 “을”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갑”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제12조(민원의 해결) ①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을”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갑”은 그 해결을 적극 지원하며 관련된 비용은 “을”이 지원한다. 다만, 주민공동체, 환경단체에 대한 민원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결한다.

② “갑”과 “을”은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공동으로 민원처리 전담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원 해결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3조(분묘의 이장) ① 예정지구내의 이장대상 분묘는 “을”的 책임 하에 조사하고, 개장 및 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을”은 분묘를 이장함에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무연고 묘지의 경우에는 “을”的 요청에 의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제14조(환매) “을”은 토지매입 완료 후 협약이 해지되거나,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어 계획된 사업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환매하기를 원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제15조(특약의 체결) “갑”과 “을”은 본 협약내용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협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협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지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2년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2.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3.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거나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②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갑”에게 본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 의하여 지원을 확약한 시설 등이 설치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된 때
 2. 기타 “갑”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때
- ③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실시계획승인 및 공사기간) ① 본 사업의 공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은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산하며, 사업계획서의 연차별투자계획 일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0조(공정보고) “을”은 사업계획서에 의해 성실하게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갑”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해 추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 및 안전관리) “을”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난대책을 수립



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지원) ① “갑”은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업무의 지원을 위해 토지소유자 대표 협의체의 구성, 지가의 감정, 보상금지급 대행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 본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승인 등을 “을”的 책임으로 추진하고, “갑”은 인·허가, 승인 등을 전담하는 관계공무원을 배치하여 적극 지원한다.

③ “갑”과 “을”的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갑”은 본 사업에 필요한 도로, 교량 등 간접시설을 “갑”的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범위는 사업 대상지 연접지점까지로 하며, “을”的 본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 내의 통행 도로, 상·하수처리시설 등 사업지내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간접시설은 “을”的 부담으로 설치한다.

제23조(사업시행 후 시설물 관리) 본 사업을 위하여 “을”이 설치하는 도로 등 공공시설은 본 사업이 준공된 후 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하여 함양군으로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처리시설은 “을”이 직접 또는 준공 후 마을자치회를 구성하여 이관하고 관리한다.

제24조(사무실)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를 함양군으로 이전하거나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협약당사자간에 본 협약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독립적인 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판정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권한은 “갑”과“을”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6조(관련법규의 적용 등) ① 본 협약 및 본 협약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 등 문서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개발관련법령에 의한다.

②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고 동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공모 시 적용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27조(재판관할) 본 협약에 관하여 쟁송이 발생 할 경우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하고 각 1부씩을 보관한다.

2009. 8. 27.

경상남도 함양군

대표자 함양군수

천사령

천사령

(주) 다온

대표자 대표이사

민세식

민세식



부 속 서 류

부록 1. 사업시행자 주주구성 및
지분율 현황

부록 2. 사업계획서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부록 1. 사업시행자 주주구성 및 지분율 현황

주주구성 및 지분율현황

주주명	소유 주식수	지분율
민 세 식	35,000주	88%
권 위 정	5,000주	12%
이 지 홍	-	-

총 주식 수 : 보통주식 40,000주

1주의 금액 : 금10,000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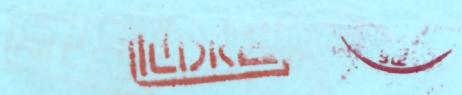
2009년 08월 26일

주식회사 다온

경남 양산시 다방동 504-5 303호

대표이사 민세





부록 2. 사업계획서(별첨)